

## <별첨> 신용회복 지원 방향

### 1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향

#### □ 신용회복지원 선례

- '21.8월,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 지원
- '20.1.1.부터 '21.8.31.까지 발생한 소액연체(2천만원 이하)를 '21.12.31.까지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공유·활용하지 않기로 협약 체결

#### <'21.8월 신용회복 지원의 효과(금융업권 보도자료)>

- ①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(평균 670점 → 704점)
- ② 약 12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(680점)를 상회
- ③ 약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(866점)를 상회

#### □ 신규 지원방향

#### <지원 필요성>

- '21.9~'23.12월 기간 중 2천만원 이하 연체발생자는 약 290만명('23.12월말 기준)이고, 이 중 전액상환자는 약 250만명에 달하나,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 등에 반영되어 금융거래에 어려움 지속 중(NICE 기준)
- 채무를 전액상환하더라도, “과거 연체를 했었다”는 사실은 금융거래를 어렵게\* 하는 낙인효과(Stigma effect)로 작용
  - \* 신용점수 하락, 대출·카드발급 거절 및 고금리 등 불이익 요인으로 활용

⇒ 채무 전액상환 등 재기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, **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**토록 지원 필요

## < 지원내용 >

- (대상) '21.8월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②'21.9월부터 '24.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②소액연체자(2천만원 이하) 中 ③'24.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를 대상

- \* ① '21.8월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려움 고려하여 기간 설정  
② 전체 연체발생자(296만명) 中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(290만명)가 98.0% 차지  
③ '21.8월 신용회복 지원시에도 채무이행 기간을 약 4개월 부여

- (방식) 신속히 **소금융권 협약을 체결**하여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
  - 신용정보원 · 금융회사 · 개인신용평가사(CB)가 **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,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약**

## □ 기대효과

- ① 최대 290만명\*의 연체채무 전액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- \* 290만명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상환하였고, 나머지는 '24.5월말까지 전액상환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

-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**신용카드 발급,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 가능**

- ② 발표일 이후 채무상환자도 대상에 포함시 **채무 변제 독려** \*효과

- \*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

## 2 금융-통신 통합 채무조정

### □ 통신채무 채무조정 현황

-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\*만 직접 채무조정 가능

\* 통신채무는 ①핸드폰기기비, ②통신비(전화·문자), ③소액결제대금으로 구성  
→ 핸드폰 기기비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

- 아울러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 가능(간접 채무조정)

### □ 통신비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필요성(사례중심)

※ 신용회복위원회 실제 상담사례

- 채무자A는 금융채무(3천만원)과 통신채무(1백만원) 보유 중 실직, 신복위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,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 지속
- 구직활동을 위해 휴대폰 이용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통신채무를 정리하고자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여 채무상환부담 증가

⇒ 통신사,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하여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 추진

-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-신복위 협의를 거쳐 추진

### ③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 강화

#### □ 연체 초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현황

○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우려자(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자, 폐업자 등)를 대상으로,

- 이자를 30~50%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\* 특례를 운영중('23.4월~)

\* 신복위 채무조정 : (연체 30일 이하)신속채무조정 (연체 31~89일)사전채무조정 (연체 90일 이상)개인워크아웃

#### □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강화 방안

○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을 '30~50%' → '50~70%'로 확대

\* (기존)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우려자(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자, 폐업자 등)  
→ 이자 30~50% 감면  
(확대)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고령자의 경우 → 이자 50~70% 감면